

2019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

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72호)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용역대가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, 통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적용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.

===== 2020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=====

| 구 분 | 일임금액(원) | 환산비(Si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특 급 | 337,025 | 1.159 |
| 고 급 | 290,868 | 1.000 |
| 중 급 | 258,304 | 0.888 |
| 초 급 | 171,622 | 0.590 |

<참고사항>

1. 환산비(Si)는 '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'의 노임가격 기준(1.000)에 따른 등급별(특급, 중급, 초급) 노임가격 비율(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)임.
2. 이 노임가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함.
3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일부개정(18.12.13)으로 인하여 통계명칭을 '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'로 변경(19.7.23) 함.

2019년 12월 23일

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

[임금통계작성기관(통계청승인 제378001호)]

